

##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III(복수학위) 유의사항 안내

(2023.09.22.)

### [Outbound(파견)생]

Outbound(파견)생은 해당 학기에 상대교에 파견이 된 학생으로, 행정적인 사유로 당해학기 포탈상 등록 상태이기는 하나 이는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동일한 **등록생의 권한(대학원 학칙 제9조)**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

※등록생의 권한: 수강신청, 수업 수강, 졸업관련 학사절차(연구계획서 제출, 논문심사, 종합시험) 등

#### 1. 학사

가. Outbound로 신고가 된 학생은 당해학기 수강신청,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, 논문 심사, 재학생만 지급 가능한 장학금 수령 등 **대학원 학칙 제9조 등록생의 권한**이 없음 (Outbound 기간 중 수강신청 된 과목은 모두 삭제될 예정)

※ 위와 관련하여 학과에서는 당해학기 Outbound(파견)생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철저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 위 사항을 어길 시, 학과에서 승인 불가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2. 학점인정

가. 학생 본인의 졸업 요건 등을 숙지하여 상대교에서 학업을 마친 후, 상대교 성적표를 근거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취득학점 인정원 제출

※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: 대학원 홈페이지(<http://graduate.yonsei.ac.kr>) 상단메뉴 '학사안내' -> '어학/국제' -> '공동복수학위' -> '복수/공동학위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'

나. 본교 대체인정과목은 입학 이후에 개설된 과목만 가능

#### 3. 장학금 지원

- 아래의 장학금 지원 기준 및 요건 숙지 요망

### [Inbound생]

#### 1. 학사

가. 학생 본인의 졸업 요건 등을 숙지하여 원 소속교에서 이수한 성적표를 근거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취득학점 인정원 제출

나. Inbound생 중 원 소속교 학점 이수를 위해 outbound로 신고가 된 학생의 경우, 기존 outbound(파견)생과 동일하게 **대학원 학칙 제9조 등록생의 권한**이 없음

※ 위와 관련하여 학과에서는 당해학기 Outbound(파견)생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철저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 위 사항을 어길 시, 학과에서 승인 불가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2. 학점인정

가. 학생 본인의 졸업 요건 등을 숙지하여 본교 입학 이후 원 소속교에서 이수한 성적표를 근거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작성

※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: 대학원 홈페이지(<http://graduate.yonsei.ac.kr>) 상단메뉴 '학사안내' -> '어학/국제' -> '공동복수학위' -> '복수/공동학위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'

### 3. 장학금 지원

- 아래의 장학금 지원 기준 및 요건 숙지 요망

#### [공통]

##### 1. 장학금

가. 지원사항 및 세부 지원내역: 학생별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협약상 등록금 납부처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연세대  | 상대교   |
| 연세대→상대교<br>(Outbound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 생활비 지원</li> <li>- 학기당 최대 480만원 한도 (지역별 액수 차등)</li> <li>※ 연세대 등록금은 학생부담</li> </ul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 생활비 지원</li> <li>- 학기당 최대 480만원 한도 (지역별 액수 차등)</li> <li>※ 상대교 등록금은 학생부담</li> </ul> |
| 상대교→연세대<br>(Inbound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세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한도내 지원</li> <li>※ 한국 생활비는 학생부담</li> <li>※ 매학기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급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 생활비 지급</li> <li>- 학기당 480만원 (정액)</li> <li>※ 상대교 등록금은 학생부담</li> </ul>              |

- ※ 등록금 납부처가 상대교인 경우 본교 등록금은 대학원에서 자체 면제 처리
- ※ 협약서에 첫 학기 생활비를 상호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게이오대의 경우 첫 학기는 협약서 기준을 따르며 두 번째 학기에 본 기준 적용
- ※ 생활비의 경우, 매학기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급되므로, 직전학기 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지급 예정
- ※ 학기 초과자는 등록금 12%만 지원하며, 과목 수강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 부담

나. 지원 기준

- 1) 양교 협약에 근거하여 상대교 체류 기간동안 생활비 지급
  - 입국하여 당해학기에 필요 증빙자료 제출 시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생활비 차등 지급 예정
  - 예산 처리 가능 시점 등의 사유로 매학기 말(1월, 7월 이전)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신청 시 지급 불가
- 2) 지원학기는 상대교 체류 2번째 학기를 넘지 않음
  - 등록금 납부 유형이 상대교 납부인 경우, outbound생은 파견학기 관계없이 본교 등록금 지원
- 3) 재학 학기동안 지급하며 휴학 학기는 지급하지 않음
- 4) 생활비는 파견 학생의 상대교 체류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(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) 확인 후 본교 학사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학생의 계좌로 지급함
- 5) 매학기 장학금 대상자 및 장학금액 결정. 해당학기 장학총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 지원순위에 의거 대학원에서 장학생 선발 가능
  - 기존장학생을 우선 지원하며 이후 학과별 균등지원, Inbound 학생 우선지원, Outbound 학생별 균등지원 순 판단
  - Outbound생 지원시 상대교 등록금 납부로 인해 본교 등록금이 면제되는 학생은

공동복수학위 생활비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

- 6) 일반대학원생에 한해 지급하며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 (ex. 게이오대 복수학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제학대학원생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)
- 7)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, 내규 및 내부기준을 따름

## 2. 학위 수여 및 학사 기본사항

- 가. 상대교에서 이수한 학기는 최대 2학기까지 인정
- 나. 최종학기(졸업학기)는 연세대학교에서 수학